

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(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)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)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,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·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(본인의 의무사항 포함)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

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 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.
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주요서식은 '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-자료실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1.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

- 대출명 :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- 대출한도 : 등록금(학제별 대출한도 상이, 입학금+수업료 등) 생활비 (학기별 최대 150만원)
 - ▶ 학제별 대출한도 : 대학(전문대 포함) 4천만 원, 5·6년제 대학 6천만 원, 의·치·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9천만 원,
 - ▶ 한도포함 : 일반상환학자금대출,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, 정보보증학자금대출(2005-2학기 ~ 2009-1학기)
- 대출기간 : 최대 20년(최대거치 10년, 최대상환 10년)
 - ▶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
 - ① 최대 거치기간 = 잔여재학년수 + 군복무기간(군미필자 한함)+3년
 - ② 최대 대출기간 = 60세-차주연령
 - ③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
- 담 보 : 신 용 (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)

2.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율

- 고정금리 :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
 - ▶ 2018년 1학기 기준 2.20%(학기별 고정금리)
- 학기의 기간 :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
- 지연배상금율 : 연체 3개월 이하 7%, 연체 3개월 초과 9%

3. 수수료 및 비용

-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(을)
 - ▶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
- 채무자가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(비용의 부담) 및 제6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외무)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
 - ▶ ①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
 -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
 -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
 - ④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
 - ▶ 담보설정비용, 인지대, 제세공과금 등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환(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)
 - *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(인지세 포함) 없음

4.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

-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,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
 - ▶ 예) 평년: 1,000,000원(원금) × 2.20%(금리) × N(일수)/365(일)
-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합니다.

5. 이자의 납부방법

-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(단,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)
-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(1)개월 이내,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

6. 대출상환방법
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 :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
- 원금균등(체감식)분할상환 :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
 - ※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(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)
-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
 - ▶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 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
 - * 납부 : 평일 09시 ~ 19시
 - * 예약상환 : 평일 및 공휴일 09시 ~ 23시

7.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

-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승인 및 실행 사실이 안내될 수 있음
 - ▶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고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
 - ▶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
 - ▶ 기타 대출규모,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*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

8. 대출자격 제한

-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,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*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* 대출 원리금, 지연배상금, 대지급금,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금 등
-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(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)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·공공정보*가 등록되었거나,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
 - *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,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 면책 등

-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대출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
-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
-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
 - * 대출지급 전 : 발견일로부터 2년
 - * 대출지급 후 : 발견일로부터 3년
- 대출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
-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대상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
- 학적변동,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대학 등록 전 생활비 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
- 신(편)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
- 대출 부적격자(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)

9. 주요 신고의무

-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(신고사항의 변경)에 따라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

10. 대출조건 변경

- 대출기간, 상환방법 변경 : 계좌별 1회
 - ▶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저소득(8분위 이하) 청년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
- 납부일 변경 : 계좌별 연1회

11. 특별상환 상환유예

- 대상기준 : 졸업 후 2년 이내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
- 유예조건 : 3년 원리금 납부 유예 후 유예금액 4년 분할상환
 - ▶ 세부요건은 '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-학자금대출-학자금유예대출'에서 확인

12. 유의사항

- **지연배상금 부과(사유)**
 - ▶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
 - ▶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
- **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**
 - ▶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
 - ▶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(기한전 채무변제의무)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
- **연체 시 불이익**
 - ① **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**
 - ② **소득·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 조치(가압류 등) 발생 될 수 있음**

13. 상환의무의 면제

-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상실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

1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

- 학자금대출 신청·지급 문의
(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☎ 1599-2000)
- 학자금대출 상환·조건변경 문의, 연체해소
(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센터 ☎ 1599-2230)
- 학자금대출 신용회복(채무조정) 문의
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센터 ☎ 1599-2250)